

영등포구의회  
제21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 
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발의】



2018. 10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31호로 2018년 10월 12일 권영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주민생활의 안전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전담부서 지정 등 규정(안 제1조~제4조)

나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, 안내판 설치, 운영 등 규정(안 제5조~제9조)

- 다.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 ~제14조)
- 라.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의 제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15조~제21조)
- 마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(안 제22조~제28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18. 10. 5. ~ 10. 11.)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개인 영상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29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제정 내용은
  - 안 제1조~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전담부서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5조~제9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범죄예방, 교통단속, 위법행위 단속,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며, 사전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또한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조작이나 음성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10조~제14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계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하도록 하였으며,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5조~제21조에서는 영상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의 제한, 개인정보 열람, 영상정보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22조~제28조에서는 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관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.

- 2018.10.1.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처리기기인 CCTV 설치)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, 2010.3.29. 설치된 U-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은 첨부물 참조 바람.
-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,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1)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운영 현황 (2018.10월 기준)**

구 분	계	방법	그린 파킹	공원 방법	어린이 보호	무단 투기	유관기관 (경찰서)	불법 주정차	대림 운동장
개소수	1,064	593	92	93	90	49	15	130	2
대수	2,397	1,441	125	121	220	49	15	424	2

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개인정보 보호법』

**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**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5.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도소,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·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"라 한다)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,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3. 29.>

1. 설치 목적 및 장소

2. 촬영 범위 및 시간

3.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
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